2025. 11. 14.(금)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

제2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(폐회중)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

【심의안건】

- ① 제28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의사일정 협의의 건
- ① 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

부 천 시 의 회 (의회운영위원회)

제287회 부천시의회[제2차 정례회] 의사일정 협의의 건

□ 집회개요

- 집회근거: 「지방자치법」제53조 및「부천시의회 기본 조례」제7조 1)
- 회 기: 11. 21.(금) ~ 12. 19.(금) / 29일간
 - 의사일정(안): **[붙임 1]** 참조
 - 집회일시 및 장소
 - 개회식: 11. 21.(금) 10:00, 본회의장
 - 제1차 본회의: 11. 21.(금) 10:20. 본회의장
 - 제2차 본회의: 12. 8.(월) 10:00. 본회의장
 - 제3차 본회의: 12. 19.(금) 10:00. 본회의장
 - 공 고 일: 11. 17.(월)
- 주요내용
 - 개회식
 -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2) 및 시장 시정연설3)
 -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
 -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
 -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
 - 2026년 ~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4)
 - 조례안 등 안건처리
 - 시정질문 및 답변 (도교위 → 재문위 → 행복위 順)

¹⁾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7조(집회일)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.

^{2.}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.

²⁾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2(교섭단체 기능)
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.

³⁾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

② <u>제2차 정례회에서는</u> 법 제49조에 따른 <u>행정사무감사의 실시</u>와 법 제142조에 따른 <u>예산안의 의결</u> 및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.

⁴⁾ **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(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)**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1항의 <u>중기지방재정</u> 계획의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.

□ 운영일정	
1. 제2차 정례회 개회식	一 11. 21.(금) 10:00
○ 국민의례(국기에 대한 경례, 애국가 제창, 与	구념)
○ 개회사	
2. 제1차 본회의	一 11. 21.(금) 10:20
○ 제28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회기 결	정의 건
▶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	
○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	
○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	
○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석	얼
○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	
○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	
○ 2026년 ~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	
※ 휴회 결의: 11. 22.(토) ~ 12. 7.(일) / 16일간	
3. 행정사무감사 11.	24.(월) ~ 12. 2.(화)
○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	실시
4. 상임위원회(I) — 12	. 3.(수) ~ 12. 7.(일)
○ 조례안 등 안건심사	
○ 예산안 등 예비심사	
트 케이크 H 중 시	19 0 (01) 10.00
5. 제2차 본회의	. _ :
○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○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	
○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○ 국제의 도 의기하기	긴
○ 조례안 등 안건처리○ 시리키므 (도그의 > 레모의 > 레보의 嗎)	
○ 시정질문 (도교위 → 재문위 → 행복위 順)	
※ 휴히 결의·12 9(화) ~ 12 18(목) / 10일간	

6. 상임위원회(II) — 12. 9.(화) ~ 12. 12.(금)

- 2026년도 예산안 등 예비심사
-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
-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

7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----- 12. 13.(토) ~ 12. 18.(목)

- 2026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
-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

-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-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- 2026년도 예산안
-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
-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-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
-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

□ 협의사항

○ 제28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전체의사일정

[붙임] 전체의사일정(안)

제28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의사일정(안)

【 2025. 11. 21.(금) ~ 12. 19.(금) / 29일간 】

월 일	차수	부 의 안 건	비고			
		개 회 식				
11. 21.(금) 10:00	제1차 본회의	1. 제28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회기 결정의 건				
11. 22.(토) ~ 11. 23.(일)	휴회	토요일·공휴일				
11. 24.(월) ~ 12. 2.(화)		2025년도 행정사무감사				
12. 3.(수) ~ 12. 7.(일)		상임위원회 활동				
12. 8.(월) 10:00	제2차 본회의	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(도교위 → 재문위 → 행복위 順) ※ 휴회 결의: 12. 9.(화) ~ 12. 18.(목) / 10일간 				
12. 9.(화) ~ 12. 12.(금)	수심	상임위원회 활동				
12. 13.(토) ~ 12. 18.(목)	휴회	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				
12. 19.(금) 10:00	제3차 본회의	1.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.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. 2026년도 예산안 4.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.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.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7.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				

제28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의사일정(안)

요일 월	일	월	화	수	목	금	토
	16	17	18	19	20	21 개회식 제1차 본회의	22
11 월	23/30	24 행정사무 감사	25 행정사무 감사	26 행정사무 감사	27 행정사무 감사	28 행정사무 감사	29
		1 행정사무 감사	2 행정사무 감사	3 상임위원회	4 상임위원회	5 상임위원회	6
12 월	7	8 제2차 본회의	9 상임위원회	10 상임위원회	11 상임위원회	12 상임위원회	13
	14	1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	1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	1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	1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	19 제3차 본회의	20

[※] 상기일정은 의회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.(☎ 625-8020, 8021)

2026년도 상반기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

□ 작성원칙

- 관련법규 준수: 「지방자치법」및 같은법 시행령, 「부천시의회 기본 조례」등
- 연간회기 총일수: 100일 이내
-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,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 / 임시회는 15일 이내
- ◆ 제1차 정례회: 9월 1일 집회(지방선거가 있는 해) / 결산 승인
- 제2차 정례회: 11월 21일 집회(공휴일시 다음 정상근무일) / 행정사무감사, 본예산
- **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**, 명절연휴, 시 주요행사 등 회기중복 회피
- **2026년 상반기 일정 작성**⁵⁾ ※ 하반기 일정은 7월 제10대의회에서 결정
- 5월 비회기 운영: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등
- 시정질문 실시: 분기별 1회 / 3월(임), 4월(임), 9월(정), 11월(정)
- 6월 마무리 회기 간소 운영(4일간)

□ 2026년도 상반기 일정안: 4회 35일 [임시회 4회 35일]

78	*1	71	회의일수			0 0 7		ш	
구분	회	기	금회	누계	주	요 안 건		비 고	
임 시 회	제288회	1. 15.(목) ~ 1. 23.(금)	9	9	· 2026년도 · 안건처리	업무보고	. 설	연휴: 2.16. ~	2.18.
	제289회	3. 13.(금) ~ 3. 24.(화)	12	21	· 2025년도 · 안건처리 · 시정질문	결산검사위원	선임		
	제290회	4. 21.(화) ~ 4. 30.(목)	10	31	· 안건처리 · 시정질문		· 전급 - 즉 - 선	난검사: 4월 국동시지방선기 후보자등록: 5. 선거기간 개시 사전투표: 5.29	14. ~ 5.15. : 5.21.
	제291회	6. 16.(화) ~ 6. 19.(금)	4	35	· 안건처리		. 전=	국동시지방선기	l: 6. 3.

^{5) 「}**부천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8조(의회운영 기본일정)** ② <u>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</u>하고, 그 다음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.